4.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22.2.8.자구수정)(2022.6.21.자구수정)
- 제2조(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) ①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, 장학금 종류별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.(2006.6.5.개정)(2016.12.14.개정)(2022.6.21.자구수정)
 - 1. 신입생장학금: 매 학기 신입학한 학생
 - 2. 근로장학금: 학생조교로 채용되어 행정·교육·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학생
 - 3. 직장인장학금: 학기 시작일 기준 전일제 직장인 및 시간제 직장인(2019.7.23. 자구수정)
 - 4. 학생회장학급: 원우회 회장, 총무로 봉사중인 학생
 - 5. 국가고시장학금: 재학 중 입법, 행정, 기술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
 - 6. 외국인유학생장학금: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한 외국인 유학생
 - 7. 특별장학금: 공무원 등 3급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학생
 - 8. 추천장학금: 경제적 곤란, 특별 기여 등의 사유로 대학원장이 제청(추천)하여 총장이 인정한 학생
 - 9. 모교장학금: 본교 학부 출신인 학생
 - 10. 가족장학금: 가족(배우자, 직계) 중 2명 이상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
 - 11. 협약기관재교육위탁학생장학금: 우리 대학과 직원 재교육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학생
 - 12. 학교법인 재직자장학금: 꽃동네현도학원 및 그 산하 대학 및 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학생(2019.7.23. 자구수정)
 - 13. 수도자장학금: 유기서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(2019.7.23. 신설)
 - 14. 협약대학장학금: 우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내에 입학한 학생(2022.12.6. 신설)
 - ②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대학원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3조(근로장학금 지급자격) 근로장학금은 조교로서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 전일제 학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칭한다.
- 직장(자영업 포함)에 근무하지 않고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며 주5일 이상 학교 에 있으면서 행정과 교육,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학생.
- 제4조(장학금의 신청)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장학생의 선정) 모든 장학생은 대학원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대학원장의 제청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확정된다. 다만, 근로장학금 지급자는 별도의 임용 절차에 따라 선정되며, 신입생장학금과 학생회장학금에 한하여 복수로 선정 할 수 있다.(2006.6.5.개정)(2016.12.14.단서조항삽입)
- 제6조(장학생의 자격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후 한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성적우수 장학금 및 기타의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없다.
 - 1. 복학
 - 2. 재입학
 - 3. 징계(유기정학 이상)해제
 - 4. 기타 학칙위반자
- 제7조(장학금 지급 유효기간) ①장학금 지급 유효기간은 해당학기에 한한다. 다만, 휴학을

하는 자가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까지 유효하다.

- ②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제8조(대학원장학위원회) ①대학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장학위원회를 둔다.
 - ②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교무입학처장, 기획관리처장 등 7인으로 하며, 간사는 대학원 교학부 행정직으로 한다.(2016.12.14.개정)(2019.2.8.개정)
 - ③이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(2016.12.14.자구수정)
 - ④삭제(2016.12.14.삭제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보 え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최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보 최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1) 삭제(2016.12.14.삭제)

별표2) 교외 장학금

장학금명	지급대상	지급액	지급조건	디미
동문회장	해당 장학금 지급	해당 장학금 지	해당 장학금 지급	2008.3.1.시행
학금	규정에 준한다,	규정에 준한다,	규정에 준한다,	